

## 2020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·초기창업기업 모집 공고

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분야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발굴·육성 및 초기창업기업(창업 3년 이내)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『2020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』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0년 7월 17일  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

### I 모집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-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분야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성장 지원

#### □ 지원 대상 : 환경산업 예비창업자, 초기창업기업\*

\* 동 공고문 상의 모든 '기업'은 개인·법인을 포함하는 의미임

- (예비창업자)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(업종 무관)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('20.7.17 기준)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(상세내역 '덧붙임5' 창업 검토 및 인정기준 참조)
- (초기창업기업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'17.7.18. ~ '20.7.17. 내에 창업\*한 기업(상세내역 '덧붙임5' 업력 검토 및 인정기준 참조)

\*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

\*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

#### □ 모집규모 : 총 100개사 내외(예비창업자 50명, 초기창업기업 50개)

※ 총 100개사 범위에서 예비창업자 지원수와 초기창업기업 지원수는 변동 가능

□ **지원분야 : 환경산업**

\* **업사이클 산업분야는 "2020년 업사이클 산업육성 지원사업" (한국환경산업협회)에 지원 바랍니다.**

환경산업 정의
<p>아래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영위하는 초기창업기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2조제3호에 의한 환경산업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환경시설 제작산업</li> <li>▪ 환경부 '환경산업통계조사' 대상 기준인 「환경산업 특수분류표(통계청·환경부)」 상의 산업</li> </ul>

□ **지원 기간 : 약 3개월 (협약일 ~ '20. 12. 4) (기간 연장 불가)**

## II 지원내용

구분	지원내용	지원규모	사업비 구성	
예비 창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시제품 제작 및 개선, 인·검증 등 창업사업화 소요자금 지원</li> <li>▪ 창업교육(40시간)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창업자별 최대 50백만원 이내</li> </ul>	정부지원금	70%
			민간 부담금	(현금*) 5% 이상 (현물**) 25% 이하
초기 창업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시제품 제작 및 개선, 인·검증 등 창업사업화 소요자금 지원</li> <li>▪ 네트워킹 프로그램 및 전문 멘토 자문 프로그램 등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기업별 최대 100백만원 이내</li> </ul>	정부지원금	70%
			민간 부담금	(현금) 10% 이상 (현물) 20% 이하

\*\* 현금: 협약기간 내 소요되는 인건비, 자산취득비 등 (통장 사본, 잔액 증명서 제출 필요)

\*\*\* 현물: '20년 1월 이후 구매된 실물자산으로서, 본 지원사업의 과제에 사용되어야 함(구매 증빙자료[전자세금계산서, 카드 매출전표, 입금증, 거래명세서, 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] 모두 제출 필요)

### Ⅲ

## 제출서류

□ **(접수기간)** 2020년 8월 3일(월) 9시 ~ 8월 17일(월) 12시(정오)까지

□ **제출서류**

-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 될 수 있음
  - 제품(서비스) 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
-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,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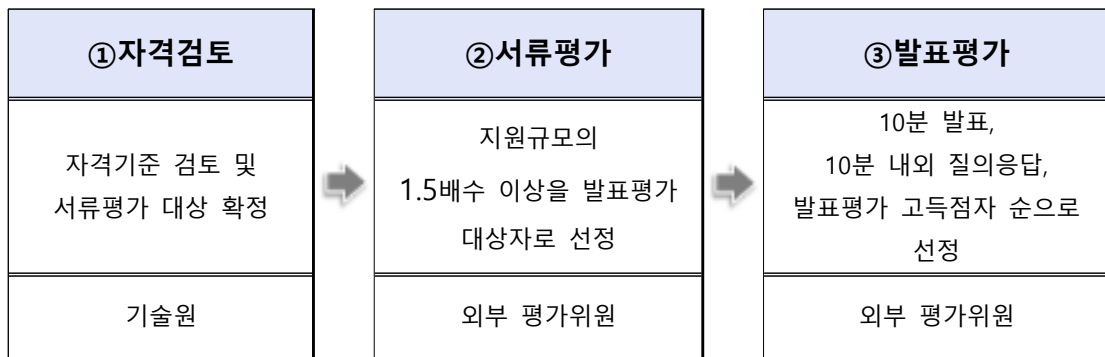
구분	제출서류(공통)
예비 창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,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</li> <li>■ 주민등록초본, 개인통장사본, 가점 증빙서류, 개인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 발급), 사실증명서[사업자등록사실여부](홈택스 발급) 등</li> <li>* "사실증명서" 內 폐업 내역 또는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, 관련 서류([폐업] 일체 폐업사실증명원, [보유사업체]사업자등록증) 제출</li> <li>*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,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</li> <li>* 모든 서류는 '20.6월 이후 신규 발급 요망</li> </ul>
초기 창업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,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</li> <li>■ 중소기업 확인서, 가점 증빙서류, 사업자 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 기업 한정), 법인 통장 사본, 기업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 발급) 사실증명서[사업자등록 사실여부] (홈택스 발급) 등</li> <li>* "사실증명서" 內 폐업 내역 또는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, 관련 서류([폐업] 일체 폐업사실증명원, [보유사업체]사업자등록증) 제출</li> <li>*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, 기업의 대표명의 개인신용정보조회서 (한국신용정보원 발급) 제출</li> <li>*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,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</li> <li>* 모든 서류는 '20.6월 이후 신규 발급 요망</li> </ul>

□ **신청방법**

- 이메일 신청(eco-startup@keiti.re.kr)

## □ 선정평가

- 환경산업 분야 제품(서비스) 개발 및 선정 동기, 사업화 전략, 시장 진입과 성과창출 전략 등을 평가(서류 및 발표평가)
  -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,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


\* 서류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며, 최종선정자는 발표평가 점수를 근거로 결정.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 본인(초기창업기업 대표)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

① **자격검토**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, 환경산업 영위 계획(또는 수행) 여부, 가점 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
\* 협약 이전 참여 제한에 해당될 시, 해당 과제 선정 취소

② **서류평가** : 신청과제의 필요성, 추진방법 및 전략, 사업비 계상 및 협약기간 타당성, 가점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평가

\* 가점 사항은 서류 평가 결과 60점 이상 취득 예비창업자(초기창업기업)에만 반영

③ **발표평가** : 신청기업의 수행역량, 추진방법 및 전략, 신청과제의 추진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\* 가점 사항은 발표 평가에 미반영

## □ 평가 기준

- 서류·발표평가에서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결과가 평가지표(가점 제외)별 배점의 60% 미만일 경우 종합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

### < 평가기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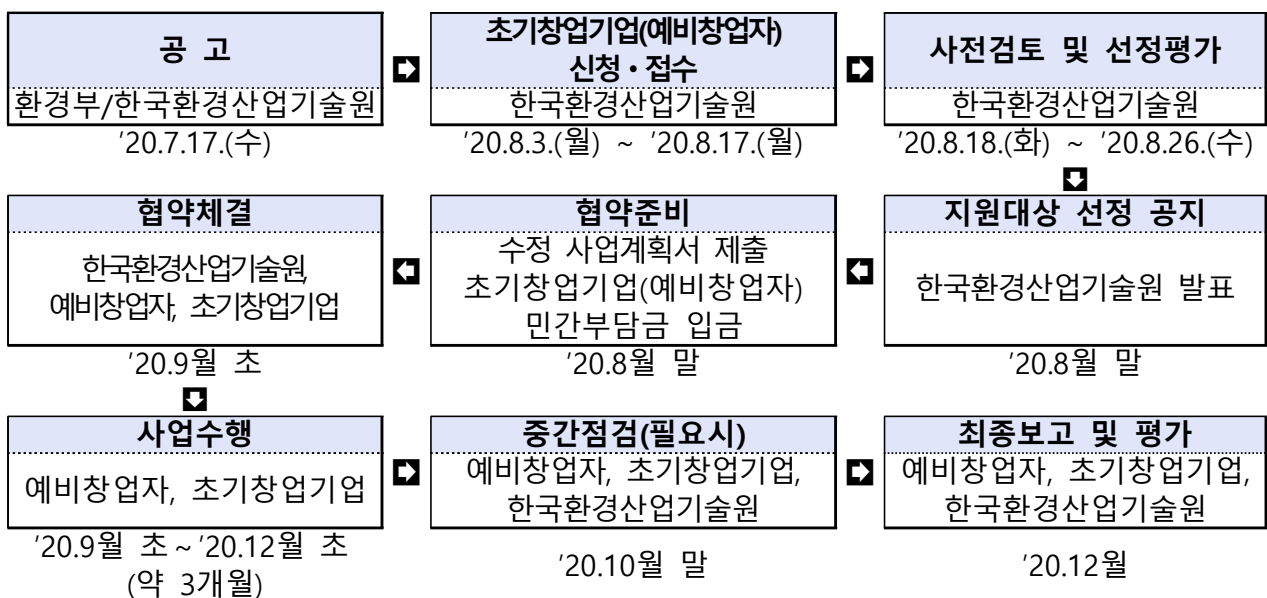
평가지표	평가내용	배점
1. 지원목적부합성	1-1. 제품(서비스) 필요성	15점
	1-2. 제품(서비스)과 환경산업 연계 여부	10점
<b>소 계</b>		<b>25점</b>
2. 시장매력도	2-1.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	10점
	2-2. 매출 성장률(추이)	10점
	2-3. 영업 현황(고객확보현황)	10점
	2-4. 수익성	10점
<b>소 계</b>		<b>40점</b>
3. 실현가능성	3-1. 내부 보유역량	10점
	3-2. 외부 제한요인(규제 및 제한)	10점
	3-3. 사업모델(기술, 서비스) 구현 용이성	15점
<b>소 계</b>		<b>35점</b>
<b>총 계</b>		<b>100점</b>

\* 서류평가·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 동일

## □ 최종선정

- 발표평가 토대로 최종 결정

## □ 추진일정(안) ※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◆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- 선정된 예비창업자(초기창업기업)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\* 지침 및 협약서는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
- 선정된 예비창업자(초기창업기업)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한다.
- 선정된 예비창업자(초기창업기업)는 기한(20. 8월말 예정)내에 창업기업 대응 자금(현금)을 신규개설계좌(신청 시 제출한 통장 계좌)에 입금하여야 한다.
- 선정된 예비창업자(초기창업기업)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(중간)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선정된 예비창업자(초기창업기업)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장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, 해당 계좌사본을 사업비 사용에 필요한 수정 사업계획서 등 지원과제별 기본사항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사업비는 기술원장과 선정된 예비창업자(초기창업기업)의 장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사업비계좌로 선금 및 잔금의 형식으로 지급하며, 지급받은 예비창업자(초기창업기업)는 사업비 수령 후 협약에 따라 사업비 사용계획을 공문으로 매월 둘째주 및 넷째주 목요일(휴일에 해당시 전일)까지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기술원장은 적정성 검토 후 사업비 사용계획이 이상 없을시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, 예비창업자(초기창업기업)는 이에 맞게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.
  - \* 적정성 검토 :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기준 증빙서류 등 검토
- 선정된 예비창업자(초기창업기업)는 동 사업의 협약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하며,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 창업(사업자 등록증 발급)을 완료하여야 한다.
  - \* 법인 전환, M&A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자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,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 예정
- 선정된 예비창업자(초기창업기업)는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3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## VI

## 유의사항

### □ 신청 관련 유의사항

◆ **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**

-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“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”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②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“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” 등에 따라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, 창업기업) 등 관련자 전원이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- 동 사업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신청자와 창업 기업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‘신청자격’에 해당되고, ‘신청 제외대상’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### □ 평가 관련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모든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예비창업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, 불참 시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서류·발표평가에서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결과가 평가지표(가점 제외)별 배점의 60% 미만일 경우 종합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

- 서류평가, 발표평가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거나 평가결과 공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(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(초기창업기업)의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## □ 선정 관련 유의사항

- 동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(초기창업기업)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선정된 예비창업자(초기창업기업)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예비창업자(초기창업기업)의 대응자금 납부 이후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급됨
- 동 사업의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
## VII

## 사업문의

### □ 사업 신청 · 평가 문의
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단지기획실(eco-startup@keiti.re.kr)
  - 이상식 선임연구원(032-540-2141)
  - 하필수 전임연구원(032-540-2112)
  - 신정범 전임연구원(032-540-2133)
  - 한규석 전임연구원(032-540-2142)



구분	번호	평가항목	증빙서류	점수
환경사업 전문성	1	친환경 인증기업(환경표지, 환경성적표지)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)	해당 인증서	1
	2	우수재활용(GR) 인증 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)	해당 인증서	1
	3	환경산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인증	해당 녹색 인증서	1
환경기술 우수성	4	환경산업 분야 해외 또는 국내 특허, 실용신안 보유 (상표권 제외)	해당 증서	2
	5	환경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	해당 검증서, 인증서	2
	6	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중 우수환경기술 50선 선정	해당 증서	2
지속가능성	7	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(enVinance) 우수 기업(A~AAA)	해당 증서	1
사업연계성	8	환경기술 이전, 거래에 따른 기술실시권 보유	해당 계약서 등 보유 증빙	1
정책 부합성	9	창업 공모전 입상기업(또는 입상자)	해당 증빙문서	2
	10	영세기업(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고 매출 10억원 미만)	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	2
	11	사회적경제기업(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)	해당 증서	2
	12	고용창출 우수기업(정부/광역시/지자체/공공기관 선정)(신청일 기준 3년 이내)	해당 증빙문서	2
	13	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, 여성기업	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	1

\* 총 가점은 최대 10점까지 부여, 서류평가 시에만 적용

# IX

## 사업설명회

### □ 설명회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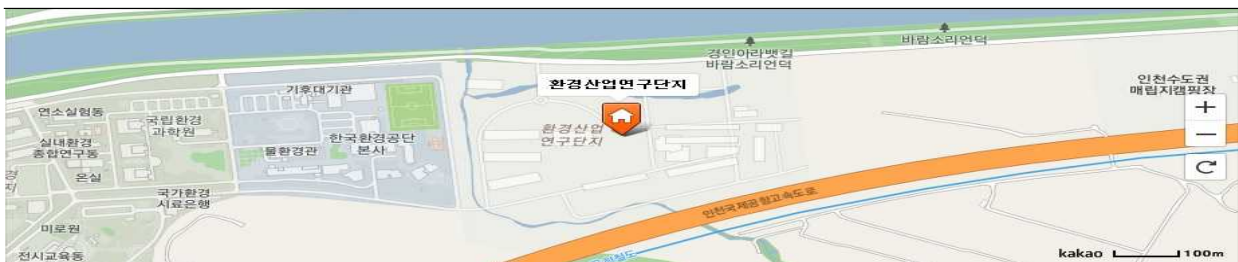
- 일시/장소: 2020. 7. 28(화) 13:30 ~ /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1층 세미나실(D12)
- 참석대상: 초기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 사업신청 관련자
- 주요내용: 2020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안내 및 1대1 상담 등
- \* 기관 내부 사정으로 향후 일부 일정 변경 가능하며,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

### □ 진행일정

시간 (3.5hr)	주요내용	비 고
13:30~14:00 ('30)	참가자 등록	-
14:00~14:20 ('20)	환경산업연구단지 소개	환경산업 연구단지
14:20~14:50 ('30)	2020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안내	
14:50~15:10 ('20)	사업신청서 작성요령	
15:10~15:30 ('20)	사업비 계상기준 안내	
15:30~15:40 ('10)	휴 식	
15:40~16:00 ('20)	공통 질의응답	
16:00~17:00 ('60)	사업별 1대1 상담(사전 신청)	사업 담당자

\* 프로그램 진행상 향후 일정 일부 변경 가능

### □ 오시는 길



- (지하철, 셔틀버스) 검암역에서 하차후 1번 출구로 이동후, 검암역 ↔환경산업연구단지 간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 이용(30분 간격)
- (택시) 검암역에서 택시 탑승(이용요금 : 4,000원 내외)

덧붙임 1~4.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, 사업 신청서 · 계획서.  
5~10. 사업신청 참고 자료 ·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(확인 필수). 끝.

##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

□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제1항제1호,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### 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- 수집·이용 목적: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/관리 등
- 수집·이용 항목
  - 필수항목: 성명, 생년월일, 전화, 휴대전화, 이메일, 소속기관 정보(기관명, 부서, 직위), 경력(기관명, 부서, 직위, 근무기간 등)
  - 선택항목: 주소
- 보유·이용기간: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의 수집·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
  - 제공된 날로부터 해당 사업 성과활용 종료시까지 보유·이용
-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  - 필수항목: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불가
  - 선택항목: 불이익 없음

### 2.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- 제공받는 자: 환경부,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
-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: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
-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: 성명, 휴대전화, 이메일, 소속기관 정보(기관명, 부서, 직위)
-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: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·이용.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

수집·이용 동의	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)
제3자 제공 동의	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)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성명

(서명 또는 인)

**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**





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계획서(공통)

기업 개요	과 제 명			
	기 업 명 (예비창업자명)		설립일자	년 월 일
	기업 대표자		사업책임자	
사업 추진 내용	제품(서비스)소 개	○		
	지원목적 부합성	○ 제품(서비스) 필요성 - ○ 제품(서비스)과 환경산업 연계 여부 -		
	시장매력도	○ 시장 규모 및 성장가능성 - ○ 매출 성장률(추이) - ○ 영업 현황(고객확보현황) - ○ 수익성 -		
	실현가능성	○ 내부 보유역량(창업자 포함) - ○ 외부 제한요인(규제 및 제한) - ○ 사업모델(기술, 서비스) 구현 용이성 -		
	성과창출 계획	○ 사업 추진일정 - ○ 자금(정부지원금+민간부담금) 집행계획 -		
	민간부담금 구성 내역 (현금·현물)	○ 현금 구성내역 ○ 현물 구성내역		
	기대효과	○ -		

\* 하단의 사업계획서증빙서류 제외 본문 10page 이내로 작성 목적은 변경 및 삭제 불가 필요시 목차 아래 향추가 가능

## 1. 제품(서비스) 소개

### 1-1. 제품(서비스) 소개

※ 개발동기, 핵심기능, 주요고객, 경쟁제품과의 차별성, 개발경과 등 관련 내용을 기재

○

-

이미지	※ 제품(서비스)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 또는 프로세스	※ 제품(서비스)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 또는 프로세스
	<이미지 설명>	<이미지 설명>

## 2. 지원목적 부합성

### 2-1. 제품(서비스) 필요성

※ 환경현안 해결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제품(서비스)의 필요성을 기재

○

-

### 2-2. 제품(서비스)과 환경산업 연계 여부

※ 제품(서비스)과 녹색산업 활성화와 연관성이 있는가를 기재

○

-

### 3. 시장매력도

#### 3-1.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

※ 제품(서비스) 관련 시장규모 및 수요예측 등을 통해 기대되는 시장 성장 가능성을 기재

○

-

#### 3-2. 매출 성장률(추이)

※ 그간 매출 및 성장률 추이 및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매출 등을 기재  
(예비창업자의 경우 시장 현황 등에 따라 창업 후 예상되는 매출, 성장률 추이 기재)

○

-

#### 3-3. 영업 현황(고객확보현황)

※ 그간 확보한 고객과 영업 관련 내용 및 지원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추가 고객 등을 기재  
(예비창업자의 경우 창업 후 예상되는 고객 규모, 영업 계획 등을 기재)

○

-

#### 3-4. 수익성

※ 3-1~3-3을 종합하여 제품(서비스)의 예상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기재

○

-



## 4. 실현가능성

### 4-1. 내부 보유역량(창업자 포함)

※ 창업자 및 직원의 내부역량(이력, 자격 등)을 구체적으로 기재

○

-

### 4-2. 외부 제한요인(규제 및 제한)

※ 제품(서비스) 개발 및 판매에 있어 예상되는 외부 요인(규제 및 제한) 및 대응대책에 대해 기재

○

-

### 4-3. 사업모델(기술, 서비스) 구현 용이성

※ 제품(서비스) 개발 정도, 수익 모델 구성, 제품 개발 추진계획, 개발 완료 후 수익 모델 구축계획 등을 기재

○

-

## 5. 성과창출 계획

※ 지원사업 추진일정, 자금(정부지원금+민간부담금) 소요계획 및 성과 창출을 위한 기타 계획 등을 작성

### ○ 사업 추진일정

-

#### <사업 추진일정>

추진내용	추진기간	세부내용

### ○ 자금(정부지원금+민간부담금) 집행계획

-

#### <정부지원금 집행계획(정부지원금+민간부담금)>

비 목	산출근거	금액(원)		
		정부지원금	대응자금	
			현금	현물
재료비	시제품 제작 비용 1식×5,000원	5,000원	50원	100원
자산취득비				
지급수수료				
...				
합 계				

### ○ 기타성과 창출 계획

-

## 6. 민간부담금 구성내역(현금 · 현물)

※ 신청서 상의 민간부담금 구성내역에 대한 상세한 기재 필요

### ○ 현금 구성내역

※ 협약기간 내 소요되는 인건비, 자산취득비 등(통장 사본, 잔액 증명서 제출 필요)

구분	금액(원)	증빙자료
인건비	1,000,000원	통장 사본 및 통장 잔액증명서
자산취득비		
...		
합 계		

### ○ 현물 구성내역

※ '20년 1월 이후 구매된 실물자산으로서, 본 지원사업의 과제에 사용되어야 함(구매 증빙자료[전자세금계산서, 카드 매출전표, 입금증, 거래명세서, 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] 모두 제출 필요)

물품명	금액(원) (VAT 제외)	구매일자	본 지원사업의 과제에 사용 여부	증빙자료
컴퓨터	1,000,000원	'20. 2. 1	(O, X)	전자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, 계약서
...				
...				
합 계				

## 7. 기대효과

※ 1~5 내용을 토대로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결과 기대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기재(매출 고용 환경현안 해결 등)

○

-

## 증빙서류(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)

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 
민간부담금(현금) 구성내역 증빙서류  
민간부담금(현물) 구성내역 증빙서류

(각 증빙서류 별 1페이지 구성되도록 작성)  
(모든 서류는 '20.6월 이후 신규 발급 요망)

## 증빙서류(예비창업자)

주민등록초본, 개인통장사본, 개인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 발급)

사실증명서[사업자등록사실여부] (홈택스 발급)

- “사실증명서” 內 폐업 내역 또는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([폐업]폐업사실증명원, [보유사업체]사업자등록증)

(모든 서류는 '20.6월 이후 신규 발급 요망, 각 증빙서류 별 1페이지 구성되도록 작성,  
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필요)

## 증빙서류(초기창업기업)

중소기업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사업자의 경우), 법인통장 사본, 기업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 발급)  
(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, 기업의 대표명의 개인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 발급) 제출 필요)

(모든 서류는 '20.6월 이후 신규 발급 요망, 각 증빙서류 별 1페이지 구성되도록 작성,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필요)

## 증빙서류(가점사항, 해당하는 경우)

인증서 및 상장 등 가점관련 증빙서류

(각 증빙서류 별 1페이지 구성되도록 작성)

(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필요)

## 증빙서류(실적, 해당하는 경우)

[매출]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

[수출] 수출계약서, 실적증명원 등

[투자] 투자계약서, 투자금액 입금내역 등

[고용] 4대 보험가입자명부(공고일 이후 발급서류), 재직증명서, 입사관련 서류 등

(각 증빙서류 별 1페이지 구성되도록 작성)

(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필요)



## 기타 참고자료

제품(서비스) 설계도, 관련 기술 특허 등  
관련 참고자료

(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필요)

□ 신청자격 중 ‘업력’ 검토 및 인정 기준

- ◆ 1회 창업한 경우 :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이  
 '17. 7. 18. ~ '20. 7. 17. 인 기업(개인·법인)인 경우 ⇒ 신청 가능
- ◆ 2회 이상 창업한 경우
  - 모든 사업자의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이  
 '17. 7. 18. ~ '20. 7. 17. 인 경우 ⇒ 신청 가능
  -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이  
 '17. 7. 18. ~ '20. 7. 17. 이고 '17. 7. 18. 이전에 창업하였을 경우 ⇒ 신청 불가

□ 신청자격 중 ‘창업’ 검토 및 인정 기준

주체	사업장소	사례		창업여부
A개인	갑장소에서	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	B법인을 설립, 동종생산	조직변경
			B법인을 설립, 이종생산	★창업
A법인	갑장소에서	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	B법인을 설립, 동종생산	형태변경
			B법인을 설립, 이종생산	★창업
A개인	을장소에서	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	B법인을 설립, 동종생산	위장창업
			B법인을 설립, 이종생산	★창업
A법인	을장소에서	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	B법인을 설립, 동종생산	형태변경
			B법인을 설립, 이종생산	★창업
A개인	을장소에서	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	B법인을 설립, 동종생산	법인전환
			B법인을 설립, 이종생산	★창업
A법인	을장소에서	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	B법인을 설립, 동종생산	★창업
			B법인을 설립, 이종생산	★창업
A개인	을장소에서	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	B법인을 설립, 동종생산	사업승계
			B법인을 설립, 이종생산	★창업
A법인	을장소에서	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	B법인을 설립, 동종생산	★창업
			B법인을 설립, 이종생산	★창업
A개인	을장소에서	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	다시 A명의로 동종생산	사업이전
			다시 A명의로 이종생산	★창업
A법인	을장소에서	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	다시 A명의로 동종생산	사업확장
			다시 A명의로 이종생산	업종추가

1. "갑" 장소는 기존의 사업장, "을"장소는 신규의 사업장
2. "을"장소는 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(연접토지 등)
3. "B"법인은 "A"가 출자한 법인임, "기존사업을 폐업"은 사업자등록증 반납 또는 취소조치를 말함

## 덧붙임 6 신청제외 대상

### □ 공통사항(예비창업자/초기창업기업)
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
- 휴·폐업 중인 경우
- 전년도와 당해년도에 환경 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·영업·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벌금·과태료를 처분 받은 경우
-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(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([www.sims.go.kr](http://www.sims.go.kr))에 의한 최근 3년(당해년도 포함)간 정부지원이력 조회)

구 분	예비창업자 지원세부사항																						
<b>사업화 자금 (최대 50백만원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제품제작, 지재권 취득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<b>최대 35백만원</b></li> <li>▶ 총 사업비(100%)의 구성 :                      정부지원금 70% + 예비창업자 대응자금 30%                      *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                    &lt; 총 사업비 구성 &gt;                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30%;">정부지원금</th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창업기업 대응자금</th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현금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현물</th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 사업비의 70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 사업비의 5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 사업비의 25%</td> </tr> </table>	정부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		현금	현물	총 사업비의 70%	총 사업비의 5%	총 사업비의 25%														
	정부지원금		창업기업 대응자금																				
		현금	현물																				
	총 사업비의 70%	총 사업비의 5%	총 사업비의 25%																				
	< 사업비 구성 예시 >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25%;">총사업비(정산필요자금)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25%;">정부지원금</th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창업기업 대응자금</th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현금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현물</th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,000만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,500만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0만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250만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100%</b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70%</b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5%</b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25%</b></td> </tr> </table>	총사업비(정산필요자금)	정부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		현금	현물	5,000만원	3,500만원	250만원	1,250만원	<b>100%</b>	<b>70%</b>	<b>5%</b>	<b>25%</b>								
	총사업비(정산필요자금)			정부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																		
		현금	현물																				
	5,000만원	3,500만원	250만원	1,250만원																			
<b>100%</b>	<b>70%</b>	<b>5%</b>	<b>25%</b>																				
< 비목정의 및 기준 >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비목</th> <th style="width: 65%;">비목 정의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집행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재료비</td> <td>사업계획서 상의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</td> <td rowspan="8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한도 없음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외주용역비</td> <td>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계장치 (공구·기구, SW 등)</td> <td>창업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</td> <td>사업계획서 상의 제품(서비스)와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관련 비용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건비</td> <td>창업기업 소속직원(예비창업자)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 하는 경우,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비</td> <td>창업기업 임직원(예비창업자)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및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교육훈련비</td> <td>창업기업 임직원(예비창업자)이 창업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급수수료</td> <td>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마케팅 및 홍보비, 기자재임차비, 사무실임대료, 위탁회계기관 정산수수료(예비창업자는 100만원 내외 위탁회계기관 정산 의무계상) 등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비목	비목 정의	집행기준	재료비	사업계획서 상의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	한도 없음	외주용역비	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	기계장치 (공구·기구, SW 등)	창업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	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사업계획서 상의 제품(서비스)와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관련 비용	인건비	창업기업 소속직원(예비창업자)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 하는 경우,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	여비	창업기업 임직원(예비창업자)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및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	교육훈련비	창업기업 임직원(예비창업자)이 창업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	지급수수료	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마케팅 및 홍보비, 기자재임차비, 사무실임대료, 위탁회계기관 정산수수료(예비창업자는 100만원 내외 위탁회계기관 정산 의무계상) 등			
비목	비목 정의	집행기준																					
재료비	사업계획서 상의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	한도 없음																					
외주용역비	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																						
기계장치 (공구·기구, SW 등)	창업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																						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사업계획서 상의 제품(서비스)와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관련 비용																						
인건비	창업기업 소속직원(예비창업자)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 하는 경우,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																						
여비	창업기업 임직원(예비창업자)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및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																						
교육훈련비	창업기업 임직원(예비창업자)이 창업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																						
지급수수료	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마케팅 및 홍보비, 기자재임차비, 사무실임대료, 위탁회계기관 정산수수료(예비창업자는 100만원 내외 위탁회계기관 정산 의무계상) 등																						
<b>창업교육</b>	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온·오프라인 교육 (40H) 운영																						

구분	정산제출 서류(증빙서류)
재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카드전표, 입금증), 거래명세서(또는 견적서),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</li> </ul>
외주 용역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카드전표, 입금증), 거래명세서(또는 견적서), 계약서, 과업지시서, 용역 결과보고서 및 내부결재 문서,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</li> </ul>
기계장치 (공구, SW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카드전표, 입금증), 거래명세서(또는 견적서), 계약서(해당시),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</li> </ul>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카드전표, 입금증), 거래명세서(또는 견적서), 계약서(해당시), 출원(등록)청구서 및 등록증, 관납료 영수증, 출원(등록)통지서,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</li> </ul>
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대보험가입확인서,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,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, 입금확인증(송금증), 급여대장 등</li> </ul>
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내여비(실집행 영수증, 출장신청서 및 출장계획서, 출장 결과보고서, [버스 및 기차-일반석 기준]), 해외여비(출장신청서, 출장계획서, 교통비 증빙서류, 출장 결과보고서, 항공 - [이코노미 클래스 기준]) 등</li> </ul>
교육 훈련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육 이수 계획서(교육일정 포함), 교육참가 신청서, 교육자료, 교육비 입금계좌 사본, 교육 이수증(교육 참가 확인서), 교육업체 사업자등록증, 교육업체 통장사본 등</li> </ul>
지급 수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공통) (필수) - 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카드전표, 입금증), 거래명세서(또는 견적서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, 내부결재 문서</li> <li>1)기술이전비 - 기술요약 내용 포함 활용계획서, 기술이전계약서, 기술이전 기업의 승인 공문</li> <li>2)학회(세미나)참가비 - 학회(세미나) 카탈로그, 참가 확인 문서, 비용 납부요청 공문, 참가 결과 보고(증빙사진 포함)</li> <li>3)마케팅 및 홍보비 - 제품 카탈로그 등의 제작 및 조사 결과물, 계약서, 홍보제작물</li> <li>4)시험인증비 - 계약서, 시험.인증서, 인증 및 검증 신청서 및 분석 결과 보고서</li> <li>5)기자재임차비 - 기자재 사용대장, 내부결재 문서(증빙사진 포함), 견적서(기자재기준단가표 포함), 임차 계약서</li> <li>6)사무실임대료 - 임대공간 증빙사진, 임대차계약서</li> <li>7)운반비 - 운송확인증, 인수증</li> <li>8)보험료 - 보험증권, 보험가입서(계약서)</li> <li>9)보관료 - 보관물건 확인증, 창고 임대 계약서</li> <li>10)회계감사비 - 위탁회계기관 정산보고서</li> <li>11)법인설립비 - 법인설립신청서류(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(www.startbiz.go.kr)에서 출력), 법인 등기부등본, 법인등록면허세, 법인등기수수료 납부 확인서류 등</li> </ul>
<p>* 지원기간 내 사용 내역만 인정되며, 부가가치세는 미인정 * 증빙사항 미구비시, 사업비 환수 예정</p>	

지원구분	초기창업기업 지원세부사항			
<b>사업화 자금</b> (최대 100백만원)	▶ 시제품제작, 지재권 취득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<b>최대 7천만원</b> ▶ 총 사업비(100%)의 구성 : 정부지원금 70% + 창업기업 대응자금 30% *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			
	< 총 사업비 구성 >			
	정부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		
		현금	현물	
	총 사업비의 70%	총 사업비의 10%	총 사업비의 20%	
	< 사업비 구성 예시 >			
	총사업비(정산필요자금)	정부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	
			현금	현물
	10,000만원	7,000만원	1,000만원	2,000만원
	<b>100%</b>	<b>70%</b>	<b>10%</b>	<b>20%</b>
< 비목정의 및 기준 >				
비목	비목 정의		집행기준	
재료비	사업계획서 상의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		한도 없음	
외주용역비	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			
기계장치 (공구·기구, SW 등)	창업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			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사업계획서 상의 제품(서비스)와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관련 비용			
인건비	창업기업 소속직원(예비창업자)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 하는 경우,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			
여비	창업기업 임직원(예비창업자)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및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			
교육훈련비	창업기업 임직원(예비창업자)이 창업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			
지급수수료	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마케팅 및 홍보비, 기자재임차비, 사무실임대료, 위탁회계기관 정산수수료(예비창업자는 100만원 내외 위탁회계기관 정산 의무계상) 등			

구분	정산제출 서류(증빙서류)
재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카드전표, 입금증), 거래명세서(또는 견적서),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</li> </ul>
외주 용역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카드전표, 입금증), 거래명세서(또는 견적서), 계약서, 과업지시서, 용역 결과보고서 및 내부결재 문서,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</li> </ul>
기계장치 (공구, SW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카드전표, 입금증), 거래명세서(또는 견적서), 계약서(해당시),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</li> </ul>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카드전표, 입금증), 거래명세서(또는 견적서), 계약서(해당시), 출원(등록)청구서 및 등록증, 관납료 영수증, 출원(등록)통지서,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</li> </ul>
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대보험가입확인서,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,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, 입금확인증(송금증), 급여대장 등</li> </ul>
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내여비(실집행 영수증, 출장신청서 및 출장계획서, 출장 결과보고서, [버스 및 기차-일반석 기준]), 해외여비(출장신청서, 출장계획서, 교통비 증빙서류, 출장 결과보고서, 항공 - [이코노미 클래스 기준]) 등</li> </ul>
교육 훈련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육 이수 계획서(교육일정 포함), 교육참가 신청서, 교육자료, 교육비 입금계좌 사본, 교육 이수증(교육 참가 확인서), 교육업체 사업자등록증, 교육업체 통장사본 등</li> </ul>
지급 수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공통) (필수) - 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카드전표, 입금증), 거래명세서(또는 견적서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, 내부결재 문서</li> <li>1)기술이전비 - 기술요약 내용 포함 활용계획서, 기술이전계약서, 기술이전 기업의 승인 공문</li> <li>2)학회(세미나)참가비 - 학회(세미나) 카탈로그, 참가 확인 문서, 비용 납부요청 공문, 참가 결과 보고(증빙사진 포함)</li> <li>3)마케팅 및 홍보비 - 제품 카탈로그 등의 제작 및 조사 결과물, 계약서, 홍보제작물</li> <li>4)시험인증비 - 계약서, 시험.인증서, 인증 및 검증 신청서 및 분석 결과 보고서</li> <li>5)기자재임차비 - 기자재 사용대장, 내부결재 문서(증빙사진 포함), 견적서(기자재기준단가표 포함), 임차 계약서</li> <li>6)사무실임대료 - 임대공간 증빙사진, 임대차계약서</li> <li>7)운반비 - 운송확인증, 인수증</li> <li>8)보험료 - 보험증권, 보험가입서(계약서)</li> <li>9)보관료 - 보관물건 확인증, 창고 임대 계약서</li> <li>10)회계감사비 - 위탁회계기관 정산보고서</li> <li>11)법인설립비 - 법인설립신청서류(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(www.startbiz.go.kr)에서 출력), 법인 등기부등본, 법인등록면허세, 법인등기수수료 납부 확인서류 등</li> </ul>
<p>* 지원기간 내 사용 내역만 인정되며, 부가가치세는 미인정 * 증빙사항 미구비시, 사업비 환수 예정</p>	

세부평가	평가내용	평가 상세
<b>1. 지원목적부합성</b>	1-1. 제품(서비스) 필요성	- 환경현안 해결 및 국내외 시장, 사회 등에 해당 제품(서비스)가 필요한가?
	1-2. 제품(서비스)과 환경산업 연계 여부	- 제품(서비스)은 녹색산업 활성화와 연관성이 있는가?
<b>2. 시장매력도</b>	2-1.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	- 제품(서비스)의 시장규모 및 미래성장성이 큰가? - 제품(서비스)의 수요 예측 결과 해당 제품(서비스)의 시장점유율 확보가능성이 높은가?
	2-2. 매출성장률(추이)	- 그동안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나,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가?
	2-3. 영업현황(고객확보현황)	- 그동안 안정적인 고객층을 확보하였거나, 향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가?
	2-4. 수익성	- 2-1~2-3 항목을 종합해보았을 때, 해당 제품(서비스)의 기대되는 수익성은 높은가?
<b>3. 실현가능성</b>	3-1. 내부 보유역량	- 예상 경쟁사 대비 기업 내부인력(대표자 포함)의 역량(지식, 경험 등)이 뛰어난가?
	3-2. 외부 제한요인(규제 및 제한)	- 사업기간 중 예상되는 외부 제한요인에 대해 기업이 잘 파악하고 있으며, 이에 대응할 대책이 충실히 준비되었는가?
	3-3. 사업모델(기술,서비스) 구현 용이성	- 제품(서비스) 개발 정도 및 추진 계획이 잘 작성되었으며, 개발 완료 후 수익 모델이 적절히 구축되었는가?



## 덧붙임 10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

참가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예비창업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초기창업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유관기관(협회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		
1대1 상담신청	<input type="checkbox"/> 예비창업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초기창업기업			
기업명 (예비창업자명)	주식회사 환경	대표자명	홍길동	
주소	인천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4층			
전화	02-2284-2222	FAX	02-2284-2223	
사업분야 (주생산품)	폐자원 에너지 플랜트 제작			
<b>참 가 자</b>				
번호	성명	직위	E-mail	핸드폰
1	환경인1	대표	abc@naver.com	010-0000-0000
2	환경인2	과장	1234@hanmali.net	010-0000-0000
3				
<p>2020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참가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20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       <b>환경인</b>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</b></p>				
<p>1) 접수방법: E-mail (feelsu@keiti.re.kr) 참가신청</p> <p>2) 문의처</p> <p>- 032-540-2141/2112/2133/2142</p>				